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규완

전화 033-630-4303 / 팩스 033-630-4332

보도자료

2020. 3. 10.(화)

제 목 **코로나19 확진자로 가장한 허위신고 사범 불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속초지청(지청장 이만흠)은 오늘(3. 10.), 속초시에 있는 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허위신고 사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
1]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55세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2020. 2. 22. 00:40경 속초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‘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이니 신고해 달라. 빨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다 감염된다’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고, 이를 진실로 믿고 출동한 경찰관 2명(전신방호복 착용)과 보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진, 체온측정 및 관리 대상자 여부 조회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 [위계공무집행방해]
- 위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신고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편의점 방문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편의점 영업에 관한 [업무방해]

② 수사경과

- '20. 2. 25. 속초경찰서,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송치
- '20. 3. 10. 보강수사 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

③ 참고사항

-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보건소 공무원의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,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음 ☑